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

## 전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2021년 6월 22일

미래·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1년 5월 26일

나. 제출자: 송순호 의원 외 8명

다. 회부일자: 2021년 6월 2일

라. 상정일자: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21.6.15.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송순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응급의료 지원을 구체화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주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제명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
- 2)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3)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(안 제3조)
- 4) 응급의료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해 규정 (안 제4조)
- 5)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우선 교육대상 등에 대해 규정 (안 제5조)
- 6)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와 관리에 대해 규정 (안 제6조~제7조)
- 7)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- 8) 홍보, 비밀 준수, 표창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~제11조)
- 9)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 (안 제12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2021년 본예산 편성

다. 해당부서: 의약과

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1. 5. 27. ~ 6. 1.) 결과 의견없음

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서선옥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 개정내용은
  - 먼저 제명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심폐소생술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,
  -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서 기존의 응급의료 지원뿐 아니라 심폐소생술의 교육과 홍보를 추가함.
  -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응급의료, 응급처치, 고위험군, 자동심장충격기<sup>1)</sup>에 대하여 심정지 환자와 심폐소생술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음.
  -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구민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,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조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.
  - 안 제4조는 기존 조례 제3조와 동일하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·관리에 대한 응급의료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, (강행규정)
  - 안 제5조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것으로 안 제1항에 교육을 받고자하는 구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구민의 권리를 명시하였으며,

---

1) 자동심장충격기(AED):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의료기기

우선 교육 대상자로

-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
  - (신설)자원봉사자,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, 학생 및 교직원
  -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
  - (신설)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 등을 규정함.
- 안 제6조와 제7조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조례와 같고,
- 안 제8조는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에 관한 것으로 구청장의 예산의 범위에서
-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
  -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
  - “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인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건물” 표지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9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물,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추가 하여 규정하였고,
- 안 제10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, 안 제11조에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음.
- 2019년 12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한 「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」에 따르면,
- 급성심장정지는 위암 및 교통사고보다 위험성이 높은<sup>2)</sup> 것으로 나타났으며,

---

2) 위암과 급성심장정지 표준화 발생률 비교(인구 10만명 당 발생률): 급성심장정지 39.7%, 위암35.4%  
교통사고와 급성심장정지 표준화 사망률 비교(인구 10만명 당 사망률) : 급성심장정지 35.2%, 교통사고 6.7%  
- 출처: 질병관리본부 2006-2018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

- 환자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생존율이 가장 낮았음(5.6%).
- 또한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이 약 2배 높아지고,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생존율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.

※ 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세부자료 별첨 참조

-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심폐소생술 교육 등으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과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며,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및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있음.
- 또한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모든 국민이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,
-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갖춰야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,
-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상위법에 부합되며,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.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 6. 토론요지: 생략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- 붙임 1) 2006-2018 급성심장정지 통계 1부.  
2) 관계 법령 1부.

2006-2018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

0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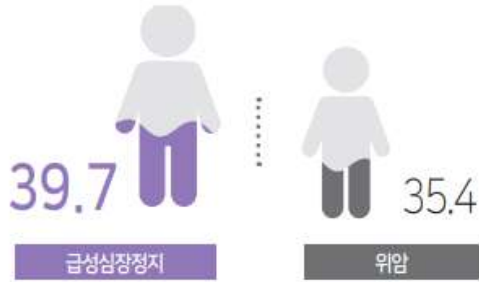
급성심장정지는  
위암, 교통사고보다 위험성 높아

위암과 급성심장정지  
표준화 발생률 비교

(인구 10만명 당 발생률)

출처

2018 급성심장정지조사(질병관리본부)  
2016 암 등록통계(국립암센터)



교통사고와 급성심장정지  
표준화 사망률 비교

(인구 10만명 당 사망률)

출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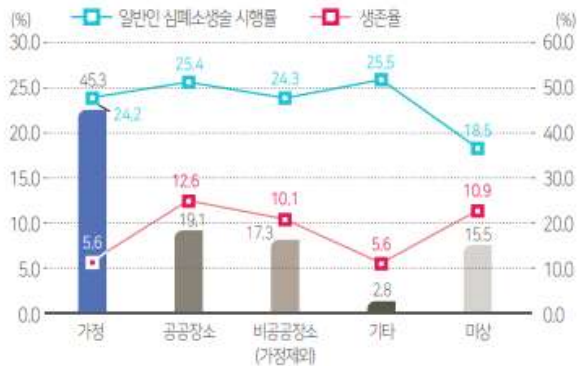
2018 급성심장정지조사(질병관리본부)  
2018 사망원인통계(통계청)



0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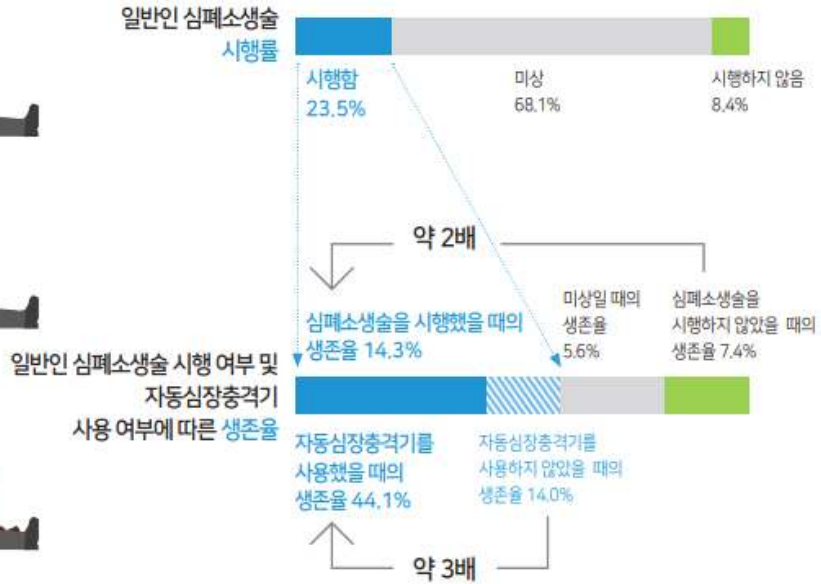
급성심장정지 환자 절반 이상이  
가정에서 발생

가정에서 발생할 경우,  
생존율을 낮아



### 03

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이 약 2배 높아지고,  
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생존율 더 높아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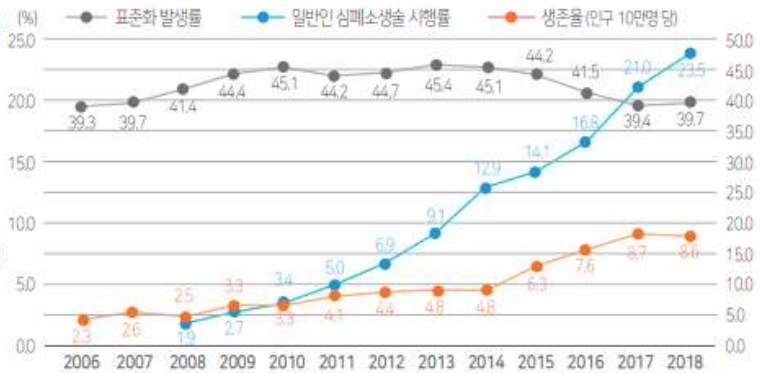


### 04

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과  
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

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 
최근 10년간('08-'18)  
약 12배 증가

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 
최근 10년간('08-'18)  
3.4배 증가





## □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
**제4조(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)**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,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.

**제13조(응급의료의 제공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,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·운영,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,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医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재정 지원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0. 24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1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
2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
3.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

는 여객 항공기 및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

4.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

5. 「선박법」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
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
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

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·폐기·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신설 2016. 12. 2.>

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